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1년 10월 1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김남규 미래생활섬유과장(02-2110-5651), 전두민 사무관(02-2110-4907)		

금 등 실물상품 거래소시장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0.17(월)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 -

□ **음성시장**이 크거나 **유통구조가 선진화**되지 못하여 **국내에 신뢰성 있는 거래시장이 미형성 된 금과 같은 실물상품**에 대한 **표준화·규격화된 거래소시장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국내 금시장은 유통량 120~150톤 중 밀수·무자료거래 등 음성시장이 60~70%를 차지하는 등 유통시장이 낙후('09 조세연구원)

○ 또한 거래소시장을 통한 **가격투명성과 품질확보**로 국내 **적정가격 형성**과 **상품시장의 고급화를 유도**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수급변동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증가

□ 실물상품의 현물 **거래소시장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제도 마련이 필요**한 바, 지식경제부는 그간 업계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을 마련**

○ 이와 관련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17(월) 15:00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 관계부처 협의(9.26~10.7), 입법예고(9.30~10.20)

□ 이번 공청회에는 김남규 미래생활섬유과장, 이종영 중앙대 법대 교수, 심영 연세대 법대 교수, 유동수 한국귀금속유통협회 회장, 김성진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회장, 차민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사무국장, 이수구 유진투자선물회사 상무, 홍순열 LS니꼬 귀금속 마케팅팀 차장, 김인수 한국거래소 본부장보, 최주섭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법률 제정안 관련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음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유동수 한국귀금속유통협회 회장은 '**한국 금 시장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최근 국내 금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 **선진화된 거래소시장**과 함께 **세무구조 및 거래관행의 개선, 산업지원책 마련** 등 금시장 전반의 발전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김남규 미래생활섬유과장은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상품 거래법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

○ 우선,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을 통하여 **금 거래소시장을 출범**하고 **타 상품의 경우**는 향후 **거래소시장 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점차 거래상품을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언급

○ 또한,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은 기존 상품의 산업 및 유통구조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별도의 법정 시장을 운영**하여 기존 구조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산업에 종사하는 **실물사업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거래소시장의 성공**을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 실물상품 거래소시장은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포괄하여 실물사업자와 금융업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참여자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만큼 **시야를 넓게 두고 제도 추진을 진행**하겠다고 언급

□ 앞으로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포함하여, 향후 **법·제도를 구체화 해가면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 **실물상품 거래소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별첨1>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공청회 개요

<별첨2>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기본 구조

별첨1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공청회 개요

□ **개최배경**

○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 및 업계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제정시 참고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1.10.17(월) 15:00 ~ 17:00

○ **장 소** :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여의도) 본관 1층 국제회의장

□ **주요 참석대상**

○ **주제발표**

① 우리나라 금시장 현황 및 문제점(한국귀금속유통협회 유동수 회장)
② 일반상품거래법안 제정 취지(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김남규 과장)

○ **토론자**

- (학계) 이종영 중앙대 법대 교수, 심영 연세대 법대 교수
- (업계) 김성진 한국주얼리산업연회 회장, 차민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사무국장, 홍순열 LS니꼬동제련 차장, 이수구 유진투자선물회사 상무
- (관계기관) 김인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 최주섭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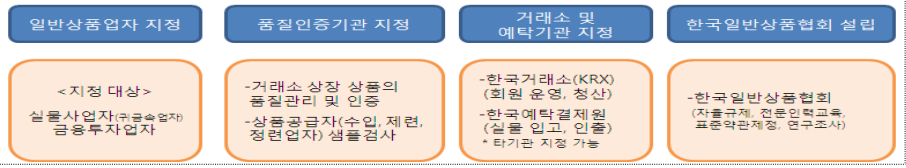
□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15:00 ~ 15:10	개 회
15:10 ~ 15:20	제1주제 발표
15:20 ~ 15:30	제2주제 발표
15:30 ~ 16:40	토론자(패널) 의견 발표
16:40 ~ 16:50	참석자 질의·응답 및 토론
16:50 ~ 17:00	토론결과 정리 및 향후 일정 안내
17:00~	폐 회

별첨2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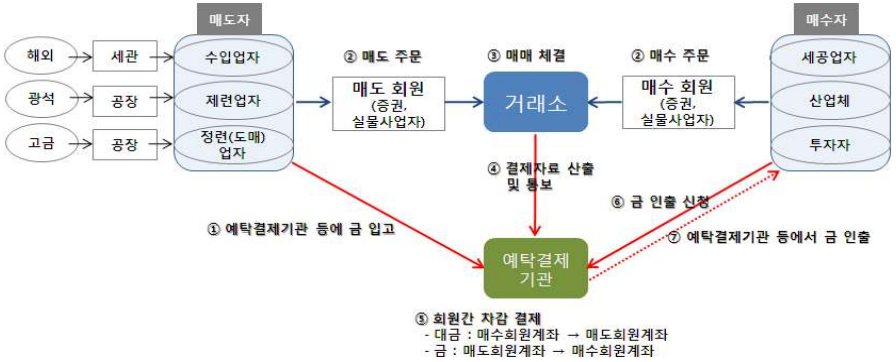
□ **(기본성격)** 일반상품 거래를 위한 **업자, 거래소 및 예탁기관, 품질인증기관** 등 주요 행위자를 설정하고, **거래규칙을 마련**하는 기본 법안

<주요 체계(안)>



□ **(거래체계) 예탁기관**에 **현물 입고(매도자) ⇒ 거래소** 통해 **매매체결 ⇒ 예탁기관에서 현물 인출(매수자)**

<거래 구조(안)>



<조문(안) : 총 8장 98개 조문(부칙 제외)으로 구성>

- ○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목적, 용어의 정의 등
- ○ **제2장 일반상품업자**(제4조~제30조) : 지정, 영업행위규칙 등
- ○ **제3장 일반상품시장에서의 매매**(제31조~제65조) : 일반상품거래소, 품질인증, 예탁, 보관 및 결제 등
- ○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제66조~제72조) :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공매도의 제한 등
- ○ **제5장 한국일반상품협회**(제73조~제77조) : 설립, 정관, 검사 및 조치 등
- ○ **제6장 감독 및 처분**(제78조~제86조) : 거래소에 대한 감독 및 보고요청, 검사, 일반상품업자에 대한 조치 등
- ○ **제7장 보칙**(제87조~제91조) 및 **제8장 벌칙**(제92조~제98조)
- ○ **부칙**(제1조~제4조) : 시행일, 경과조치 등